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 공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 개요

□ 목적

-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개선하여 연동 약정의 확산에 기여

□ 공고 내용

- 모집분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일부 지정받는 연동지원본부
- 선정규모 : 4개 기관 내외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26.3~'28.3)
 - * 지정 이후 운영 실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지원예산 :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지정규모, 사업계획 내용에 따른 필요 경비 차등 지급

□ 주요 사업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 참여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모니터링 지원
 -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설문조사 수행,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안 발굴 등
- 주요 원가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수행 및 참여기업 모집
-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신청자격 및 요건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 * 해당 기관 또는 단체 사업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거나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실적을 보유한 경우
-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보유
-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
 - ※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은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을 것'까지 의미하지 않음
- 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출 것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6.2.27.(금) ~ 3.17.(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E-mail) 제출

* 주 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이메일 : wkdrbejr1@korea.kr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 시 신청기관 공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접수는 제출기간 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 연동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붙임 1 서식) 1부
-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자유양식)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붙임 2 서식) 1부
- 전담조직 현황표 1부
- 전담인력 보유 현황 (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각 1부
- 전담조직 사무공간 보유 현황 (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각 1부

4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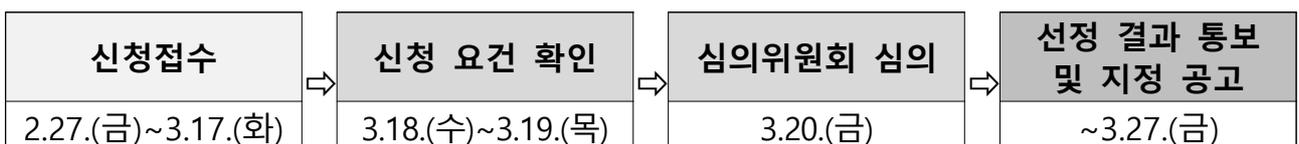
□ 연동지원본부 선정

-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홈페이지에 연동지원본부 지정 공고

* 전담조직, 전담인력, 사무공간

** 필요시 신청기관 현장 실사 및 대면 평가 가능

< 평가 절차 >



□ 평가기준

- 조직·인력·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을 것
- 업무수행 능력 (회원사 대상 교육·홍보 정책 수행역량, 현장과의 밀접성, 기관 인지도 및 신뢰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 지원금 교부

- 연동지원본부로 선정된 후, 간접보조사업자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 유의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사업 신청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이며, 선정된 기관은 총괄 연동지원본부*로부터 예산을 재교부받아 수행함
* 「상생협력법」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부 지정받은 연동지원본부
-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후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의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등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지원본부로 지정 받았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4.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붙임 1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인력 및 설비 현황	전담조직 부서명		
	전담인력	명	시설면적 ㎡
신청 내용	[] 사업 전부 지정		
	[✓] 사업 일부 지정	<input type="checkbox"/>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input type="checkbox"/>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input type="checkbox"/>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input type="checkbox"/> 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구체적으로 기재: _____)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3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